#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 **2650** 

제출연월일 : 2023. 4. . 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# 1. 개정이유

○ 사업의 종료 등의 사유로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의 일괄폐지를 통하여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의 일괄폐지
-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- 5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#### 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기간 : 2023. 3. 1. ~ 2023. 3. 22. [22일간]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# 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# 9. 참고사항

- (2022.10.24.) 자치법규 일괄폐지를 위한 부서 수요조사 실시
- (2023.01.11.) 부서 협의 후 시군종합평가(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) 대상 포함하여 일괄폐지 결정
- 10. 관련부서 : 경기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

#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폐지조례안

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.

- 1. 「하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」
- 2. 「하남시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」
- 3. 「하남시간이상수도・소규모급수시설운영・관리조례」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법무감사관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법무감사관 김 승 한
	팀장 직위·성명	법무팀장 최 설 미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이 승 규 (790-5520)